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14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김교흥ㆍ이학영ㆍ서영교

김성환 · 김동아 · 소병훈

신영대 · 한정애 · 권향엽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 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 분쟁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이 고도로 첨단화되어 재판부를 보조하는 현 수준으로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부 적절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생	제54조의2(기술심리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	
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	
보호법」 제166조에 따른 소송	
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u>단, 국</u>
<단서 신설>	<u> 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에</u>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u>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